"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..." (판례, 2011고합

669,743,746,749,753,756,759,761,763,766,769,771,777,780,782,784,792,794,796,799,802,804,806,809,812,814,816,819,82 2,824,826,829,833,835,838,841,843,845,848,851,853,855,858,861,863,865,868,871,873,875,878,881,888,891,895,898,901, 903,905,908,911,913,915,918,921,923,925,928,931,933,935,938,943,948,951,953,955,958,961,963,966,969,972,924,976,976

9,982,985-16

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7. 2011고합

669,743,746,749,753,756,759,761,763,766,769,771,777,780,782,784,792,794,796,799,802,804,806,809,812,814,816,819,82 2,824,826,829,833,835,838,841,843,845,848,851,853,855,858,861,863,865,868,871,873,875,878,881,888,891,895,898,901, 903,905,908,911,913,915,918,921,923,925,928,931,933,935,938,943,948,951,953,955,958,961,963,966,969,972,974,976,97 9,982,985-1(병합)(분리)1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61

【검 사】김성주(기소), 진현일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현주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정당법위반의 점은 면소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